

신규화학물질 [] 제조 [] 신고서
[] 수입 [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신고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 / 팩스번호:)

신고사항	①화학물질명 (총칭명)	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순도(%)		
	분자식·구조식			
	②상품명	③확인된 불순물·부산물		
	④연간 제조(수입)예정량(kg)			
	⑤분류·표시	분류		
		표시사항		
	용도	⑥분류체계		
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		[] 산업적/전문적 용도 ()	[] 소비자 용도 ()	
자료보호신청 여부	[] 해당	[] 해당없음		

⑧변경신고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수입자 (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⑨상호(명칭)	⑩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⑪대표자	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⑬수입국

⑭수탁자 (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[]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6조의3제1항, [] 제12조제3항, [] 제11조의2제2항

따라 [] 제조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[] 신고
[]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[]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 가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자료보호신청서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다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라. 종전의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(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마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신고: 100,000원 (중기업은 50,000원, 소기업은 20,000원) 변경신고: 30,000원 (중기업은 15,000원, 소기업은 6,000원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. 다만, 해당 화학물질을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.
- 순도(%)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,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.
-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.
- ⑤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.
-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,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·작성합니다.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.
-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⑩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⑨란~⑬란은 신고인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